

선거권과 투표의 차이



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. 각 후보들은 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 레이스를 달려왔다. 이제 선택은 유권자 몫이다.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선거, 이것만은 알고 투표소에 방문해보자.

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

- 2.9. 이전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
- 2.10. 이후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

출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한눈에 보는 대선 투표 정보
3월 9일



선거 당일 개인 사정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데요. 사전 투표는 언제인가요?

사전투표 : 3월 4일~5일 오전 6시~오후 6시

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 **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**합니다. 신분증은 꼭 챙겨 가세요.
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 중 선택,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



2004년에 태어난 학생입니다. 저는 투표할 수 있나요?

선거권 : 만 18세

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습니다.

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왜 3월 9일이 아닌 3월 10일까지인지 궁금하신가요?

한국 민법에서는 생일이 아닌 생일 하루 전날 만 나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.



코로나19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 걱정돼요.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까요?

1m 거리 두기

지난해 4월 재·보궐선거 때는 투표소 **입장 전 발열 체크를 한 뒤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1m 거리 두기를 유지**하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대선 때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. 투표소 관계자도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, 일부는 안면보호구까지 씩니다.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는 있습니다. 단, 옷이나 티슈 등을 활용해 입 주변을 가리고 투표해야 합니다.



선거 때마다 헛갈려요. 선거 기간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?

촬영은 투표소 바깥에서

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! 인증샷 찍는다고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.

인증샷을 남기려면 투표소 바깥에서 찍어주세요.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답니다.

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.



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투표할 수 있나요?

외출 허가를 받고 오후 6시~오후 7시 30분 투표 가능

일반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·격리자들이

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. 다만 농·산·어촌 지역에 거주하는

고령자·장애인·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

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. 🏠